



사업(유수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4.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143호로
서류공람을 이행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안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자 합니다.
첨부 : 1. 관계서류 1건
2. 고시안 1부.
3. 인가증(인가조건) 1부.
(제2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1. 치수 30820-826(88.9.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제3안)
수신 : 총무처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아택와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속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사업(유수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라. 게재내용 : 별첨
참부 : 고시문 사본 2부.
(제4안)
수신 : 종합건설본부장
참조 : 조정부장
제목 : 같은건
1. 종건조 30500- 254 (90.3.30)호와 관련임.
2. 우리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마곡 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인가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참부 : 1. 인가증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계5안)

수신 : 강서구청장

참조 : 건설관리과장,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갑은건

1. 치수 30820-826(88.9.12)호와 관련임.

2. 귀구관내 마곡동 41일대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1. 고시문 사본

2. 인가증 1부.

(계6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동건

1. 치수 30820-826(88.9.12)호와 관련임.

2.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수신처 : 시설계획과, 하수과, 농축과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 호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143호 ('90.3.16)로 도시계획사업(유수지)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태와 같이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조경부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4. 13

서울특별시 장

가.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41<sup>번지</sup>길대

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시설)
- . 명칭 : 마곡 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다  
3) 사업시행 규모

- 우수지 용량 300,000m<sup>3</sup>(면적 121,105m<sup>2</sup>)
- 엔진펌프 : 1300Hp X 5대
- 전동펌프 : 1200Hp X 5대

라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8.9.12 - 1991.12.31

바  
6) 변경이 되는 토지,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 수록 고시되어 변경이 없는 조서는 생략)

변 경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41번지 일대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유수지)마곡 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유수지 용량 : 300,000m<sup>3</sup>(면적 121,105m<sup>2</sup>)
  - 엔진펌프 : 1300Hp X 5대
  - 전동펌프 : 1200Hp X 5대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 호
6. 사업기간 : 1988.9.12 - 1991.12.31
7. 변경이 되는 토지, 수용합 건물 및 지장물의 세목 조사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조경부)에 비치된 조사와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유수지)의 실시계획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태  
조건을 부하여 인가함.

1990. 4. 13

1990. 4.

서울특별시장

( 인가조건 )

1. 본 사업은 유수지 계획선을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 타 시설물 및 공사와의 관련이 있을시는 수허가자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3. 제반 구조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 본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준공 도서를 갖추어 우천시 및 강서구청에 준공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이 되는 토지조서  
가 계획 되는 토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서구 마곡동	406-2	천	1,499		박유지
2	"	407-4	도로	68		"
3	"	407-6	"	2,702		"
4	"	37-13	주거	54	강서구 마곡동 5	이종욱
5	"	37-15	"	2	"	"
6	"	50-24	답	19	관악구 신림동 538-39	김민규외2
7	"	69-21	도로	20		박유지
8	"	55-11	계	15		"
9	강서구 가양동	422-48	도로	477		"

나 변경(면적)되는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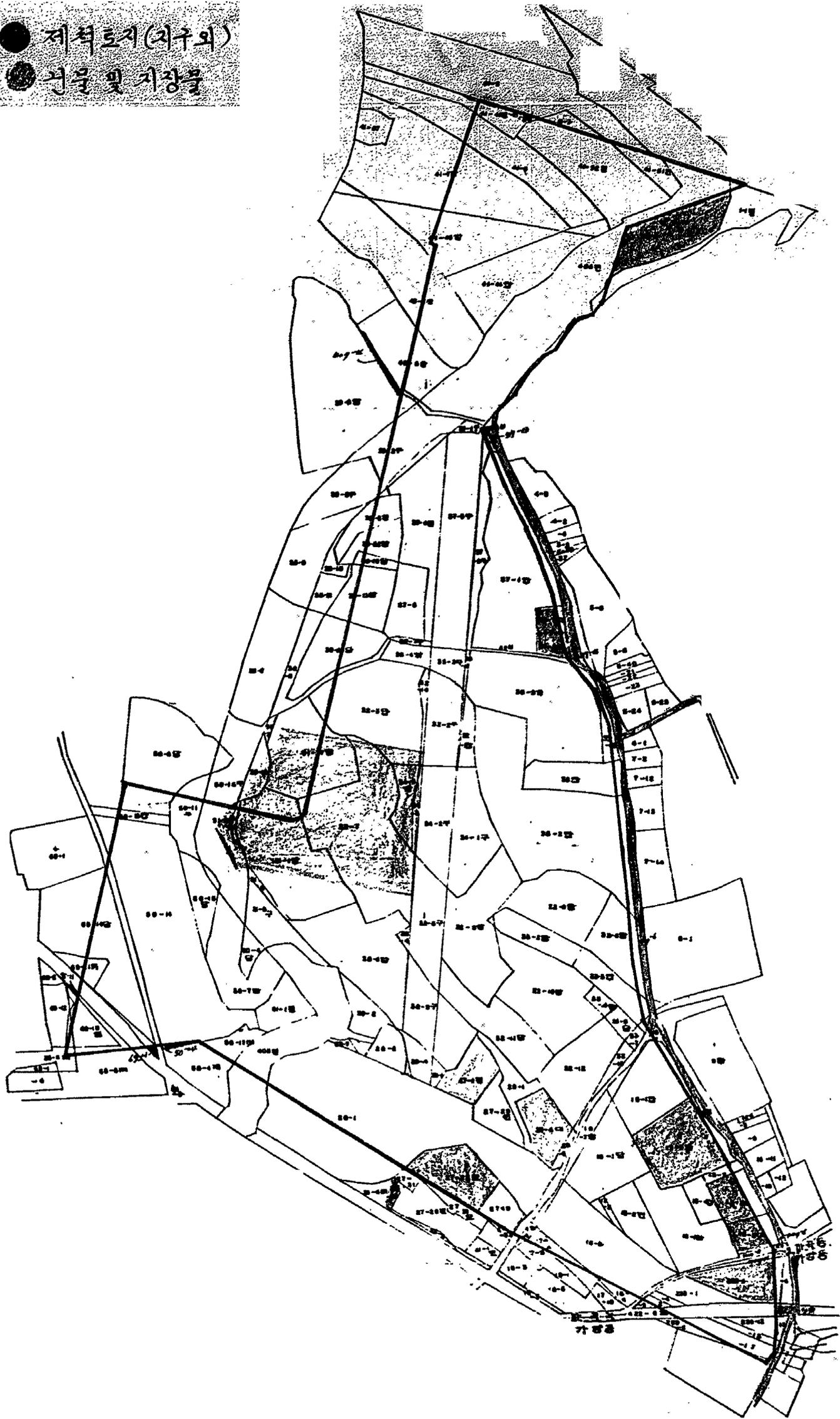
1	"	41-87	천	당초 87㎡ 변경 83㎡		박유지
---	---	-------	---	------------------	--	-----

• 당초 실시계획인가시 수록 고시된 토지조서중 변동이 없는것은 생략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사

연번	소재지번	종 류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마곡동 37-8	주 택	62.15 <sup>㎡</sup>	강서구 마곡동 37-8	신호섭	강서구 방화동 597-30	강서단위 농업협동조합	
2	" 37-9	"	59.24 <sup>㎡</sup>	" 37-9	백철용	중구 남대문로2가 19-1	(주)국민은행 여의도지점	
3	" 27-30	"	70.0	영동포구 목동 264-3 (양천구)	양동농지 개발조합			
4	" 15-3	공 장 (명성)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강서구 마곡동 15-3	박영관			
5	" 15-6	공 장 (동산기업)	"	용산구 원효로2가 251-2 9 140-112	윤치환 우			
	" "	건 물	110.08 <sup>㎡</sup>	중구 수하동 26 100-210	장석창			
6	" 15-2	공 장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양천구 목동아파트 114동 102호	신용근			
	" "	건 물 (점포)	103.47 <sup>㎡</sup>	"	"			
	" "	건 물 (상고)	63.9 <sup>㎡</sup>	"	"			
7	" 258-1	유류저장탱크 (천일)	24,000 <sup>ℓ</sup> 4개 18,000 <sup>ℓ</sup> 1개	원주시 태창동 868-3	김병호			
	" "	"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	"			
8	" 27-22	석재공장 (동형)	"	강서구 화곡본동 1126-2 현대빌라 디동 106호 112-019	김동수			
9	" 28-4	건 물	79.6 <sup>㎡</sup>	관악구 동작동 307 (동작구) 156-1000	이상섭			
	" "	공 장 (우성기계)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강서구 마곡동 28-4	임대성			
	" "	공 장 (대흥금속)	"	"	우동진			
	" "	고물상 (신평)	영업권1식	마포구 염리동 173-6 21-090	우동식			
10	" 27-1	건 물	2 동 200.35 <sup>㎡</sup>	강서구 마곡동 27-1	김화경			
	" "	공 장 (합성유화)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유류탱크7개	"	"			
	" "	공 장 (성원화학)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	구기용			
11	" 32-7외10	바나나하우스	14 동 7,928.28 <sup>㎡</sup>	강서구 방화동 559-5	김현오			
	" "	팜 프 데추나무	5 개 349 주	"	"			

● 저척토지(지구외)  
 ● 건물 및 지장물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종건조 30500 254

362-3656

1990. 3. 30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치수과장

제목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요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45호 (88.9.12)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나 당초 인가고시 토지조서에 착오로 편입된 지구외 토지 (9필지)를 제척시키고 또한 당초 물건지조서에 누락된 건물 및 지장물조서를 삽입코자 소유자와 이행관계인의 공담과 의견청취를 필하였기 등 도시계획사업 (유수지)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담공고문 사본 1부  
 2. 계획 토지 조서 1부  
 3.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4. 의견 제출사항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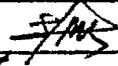
신청	하수국장	김	건설	치수과장	전결
작성일시	1990. 4. 2	번호	605	외수계장	후
처리과	1990. 4. 03	782	(공란)	수방계장	후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903.20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종건조30354- 204	(전화: 362-3656)	시행상 특별취급	15-12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종합건설본부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보조 기관	차장  조경부장  공사4과장 	협조 기관 협조통계관  협조부담담당관  시설계획과장  치수과장 	문 서 통 계 	
기안채입자	이연배 (이재호)			
경유 수신 참조	각안 참조	발신 명칭의		
제 목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 공람 공고			
(제 1 안)				
수신	내부 결재			
계 목	갈 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6호 (88.6.4)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745호 (88.9.12)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었으나,				
2. 당초 인가고시 토지조서에 착오로 편입된 지구의 토지 (9필지)를 제척 시키고 또한 당초 물건지조서에 누락된 건물 및 저장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인가 신청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1990.3.16

별첨 공고(안)을 <sup>1</sup>만국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3. 공람방법은 각 물건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은

물론, 도시계획법 제25조<sup>2</sup> 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sup>2</sup> 제2항<sup>2</sup>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의 이해에 공하고자 합니다.

첨부 공고(안) 및 토지 및 건물등 조서 (변경분) 각, 1부. 끝.

(계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서울특별시청

참조 법무담당관 공보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시보

1. 아태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속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가. 구 분 : 공 고

나. 건 명 :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 공람공고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25조<sup>2</sup>, 동법시행령 제27조<sup>2</sup> 제2항<sup>2</sup>

첨부 공고문 및 토지 및 건물등 조서 사본 각 2부. 끝.

(계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 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6호 (88.6.4)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결정 및

지적승인된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독하기	
위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및 토지 및 건물등 조서 사본 각 1부. 끝.
수신처	서울특별시 (치수과장, 시설계획과장)
(제 4 안)	
수신	강서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장 <span style="float: right;">(합동)</span>
제목	갑 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6호 (88.6.4)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결정 및	
지적승인된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독하기 위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오니 물건지 조서 및 도면	
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이해에 공하기 바라며,	
2. 착후 보상 추진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계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의견이 있을시는 종합하여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및 토지 및 건물등 조서 (변경본) 각 1부
	2. 도면 (기송부 도면 참조). 끝.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 음

1. 우천시 수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역에 편입되는 귀하 소유 및 관계되는 재산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법 제25조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공람 공고문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조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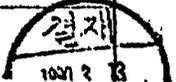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 구역내 편입 재산의 표시 : 별첨 토지 및 건물등 조서와 같음

첨부 공고문, 토지 및 건물등 조서 각 1부, 끝.

수신처 토지 및 건물등 조서에 수록된 개별 명단 이기시행.



(계 6 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민과장

제목 관인 날인 의뢰

1.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공람공고에

필요한 관계서류에 관인 날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서류 부분 1부, 끝.

공	신사	1990	도시계획	24호
관	관	장	법	제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서울특별시 공고 제143호

도시계획사업(유수지)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6 (88.6.4)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유수지 시설공사구간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및 건물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니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간음)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공람장소: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조경부,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나.공람 공고기간:1990.2 - 1990.3

1990. 3.

서울특별시장



0. 공람 개요

가.사업시행지: 강서구 마곡동 41번지 일대

나.사업의 종류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유수지 시설)
- 명칭: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다.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개요: 유수지 용량 300,000M<sup>2</sup> (면적 121,105M<sup>2</sup>)

엔진펌프 (1300PS) 5대, 모파펌프 (1200HP) 5대

바.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988.9.12 - 1991.12.31

바. 변경이되는 토지 및 수용합 건물 및 지장물 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당초 실시계획인가시 수록 고시되어 변동이 없는 조서는 생략). 끝.